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

제출년월일 : 1997. 2 .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96. 2. 21 조직개편이후 조직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규 행정수요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본청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본청의 실·국·본부중, "재정국"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국" 을 설치함 (안 제3조).

나. 기획관리실에 경영수익사업 사무를 분장함(안 제4조).

다. 폐지되는 재정국의 세정과, 재정경영과, 회계과, 청사건립 담당관실의 사무와 대전사랑운동등 애향운동에 관한 사무를 내무국으로 조정함(안 제6조).

라. 경제국에 산·학협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7조).

마. 내무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의 사무와 기획관리실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국으로 조정함(안 제8조).

바.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 “시민생활심의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애향운동담당”을 “새마을진흥계장”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재정국장”을 “내무국장”으로,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대전광역시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예술계장”을 “예술2계장”으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계장”을
“예술1계장”으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조직개편내용 : 별첨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재정국”을 삭제하고, “경제국” 다음에 “문화체육국”을 신설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3. 예산의 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심사,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통신·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후생 및 시험·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시책 및 구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대전사랑운동등 애향운동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7. 시유재산 및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9. 청사건립·재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다른 실·국·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경제국) 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관광진흥·유통·소비자보호·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진흥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4. 공단조성·관리 및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가스 및 광·공업에 관한 사항
6. 농·축·수산물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술진흥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관리등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에 관한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시민생활심의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애향운동담당”을 “새마을진흥계장” 으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시민생활심의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5조 제2항중 “애향운동담당”을 “새마을진흥계장” 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재정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제2조 제5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문화계장”을 “문화재계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제4조 제3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며,

제4조 제5항중 “예술계장”을 “예술2계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중 "문화계장"을 "예술1계장"으로 하며,

제20조 제2항중 "문화계장"을 "예술1계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실·국·본부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정국·경제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환경국·교통국·도시계획국·건설국·민방위재난관리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 (실·국·본부 설치) ---------- ---------- ----- 경제국·문화체육국 ---------- ---------- ---------- ---.
제4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예산의 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기획관리실) ---------- ----------. 3. 예산의 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심사,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 (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3. (생 략) 4. 문화·예술·문화재·체육에 관한 사항 5. (생 략) 〈신 설〉	제6조 (내무국) ---------- ---. 1. ~3. (현행과 같음) 4. 대전사랑운동등 애향운동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7. 시유재산 및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9. 청사건립·재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제국) 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과학진흥 및 중소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공단조성·관리 및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가스 및 광·공업에 관한 사항 4. 통상진흥·유통·소비자보호·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국) ----------. 1. 경제·관광진흥·유통·소비자보호·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진흥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4. 공단조성·관리 및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가스 및 광·공업에 관한 사항 6. 농·축·수산물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국) 재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영사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시유재산 및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5. 청사건립·재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 ----------. 1. 문화예술 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술진흥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관리등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주요내용

시 본 청

1 총 괄

현 재	2실 10국 1본부 4관 4담당관 37과 139계 4담당
개 편	2실 10국 1본부 3관 4담당관 37과 139계 2담당
증 감	---------- △1관 △2담당

2 내 역

◇ 실·국·본부· 관 (△1관)

○ 폐 지 (1국 2관)

- 재 정 국
- 시민생활심의관
- 산업정책심의관

○ 신 설 (1국 1관)

- 문화체육국
- 정책심의관

◇ 담당관·과

○ 폐 지(2과)

- 재정국 재정경영과
- 경제국 통 상 과

○ 신 설 (2과)

- 경 제 국 과학진흥과
-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과

ㅇ 부서·명칭변경 ———————————— 1담당관 4과

· 내무국 문화예술과 →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로

· 〃 체육진흥과 → 〃 체육진흥과로

· 재정국 세 정 과 → 내 무 국 세 정 과 로

· 〃 회 계 과 → 〃 회 계 과 로

· 〃 청사건립담당관 → 〃 청사건립담당관으로

◇ 계·담당 : 4담당 7계 폐지, 2담당 7계 신설(△2담당)

ㅇ 폐 지 ———————————— 4담당 7계

· 시민생활심의관실 시민생활담당

· 〃 애향운동담당

· 산업정책심의관실 산·학협동담당

· 〃 기업유치담당

· 기획관실 국제협력계

· 문화예술과 예 술 계

· 재정경영과 재정경영계

· 경제정책과 경제분석계

· 〃 과학진흥계

· 중소기업과 판로지원계

· 통 상 과 통상진흥계

ㅇ 신　설 ———————————————— 2담당 7계

· 정책심의관실 정책 1, 정책2

·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1계, 국제협력2계

· 문화예술과 예술1계,　예술2계

· 중소기업과 통상지원계

· 과학진흥과 과학협력계

·　　〃　　과학산업계

ㅇ 부서·명칭변경 ———————————————— 5계

· 시정연구단 시정연구계　→　기획관실　　시정연구계로

· 재정경영과 재산관리계　→　회　계　과　재산관리계로

· 재정경영과 세외수입계　→　세　정　과　세외수입계로

· 통　상　과 유통관리계　→　경제정책과　유통관리계로

· 통　상　과 소비자보호계 →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계로

※ 민원봉사실 문서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업무」를 회계과 계약조달계로 이관

〈기 능 신 설〉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계 소속으로 「**교통연구실**」 신설 (전문직)

· 건축주택과 도시경관계 소속으로 「**디자인실**」 신설(전문직)

※ 폐지되는 기구의 기능 담당부서

· 시민생활심의관실 시민생활담당 기능

⇒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즉시처리계로

· 〃 애향운동담당 기능

⇒ 자치행정과 새마을진흥계로

· 재정경영과 재정경영계 기능 ⇒ 예산담당관실 투자관리계로

· 경제정책과 과학진흥계 기능 ⇒ 과학진흥과 과학협력계로

· 산업정책심의관실 산·학협동담당기능

⇒ 과학진흥과 과학산업계로

· 산업정책심의관실 기업유치담당 기능 ┐
· 경제정책과 경제분석계 기능 ──┘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계로

· 중소기업과 판로지원계 기능 ──┐
· 통 상 과 통상진흥계 기능 ──┘ ⇒ 중소기업과 통상지원계로

사 업 소

1 총 괄

○ 현 재 :	19사업소	2담당관	8부	13과	104계
○ 개 정 :	18사업소	2담당관	8부	14과	108계
○ 증 감 :	----------		△1사업소	증1과	증4계

2 내 역

◇ 사업소 통·폐합

·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
· 근로자 종합복지관(폐지) ┘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 기구 통·폐합, 신설, 명칭변경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시설관리소
  · 기전계 신설 (지역사업소의 가압장, 배수지 관리업무 이관)

○ 지역사업소 (동부·중부)
  · 급수계를 폐지하여 공무계로 통합
  (공무계의 업무와 기능 중복 및 업무연계성 모호)
  ※ 기구·인력은 상계 조정하여 신규수요 부서 신설 (수도시설관리소, 건설 안전사업 소로 조정)

〈종합건설본부〉

○ 건설1부 하천담당의 3대하천 시공·관리기능 및 인력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조정 이관

○ 건설1부 도로담당 → **공사1담당**으로 명칭변경
○ 건설1부 하천담당 → **공사2담당**으로 명칭변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 기구·기능보강(2과 1실 5계 → 3과 1실 8계)

【 명칭변경 】
·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 시설관리과를 → 도로관리과로
· 시설관리과 도로관리계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계로
· 시설관리과 교량정비계 →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계로
· 시설관리과 시설정비계 → 도로관리과 즉시처리계로
※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추진하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환경 보전과 시정저해 요인의 사전예방업무 「즉시처리계」로 이관

【 신 설 】
· 서무과 단속계 신설 (과적차량 단속업무 등 추진)
· 하천관리과 신설 (하천관리계, 하천정비계 신설)
※ 3대 하천 시설전담 관리기능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함 (종합건설본부 하천담당기능 등 조정이관)

〈장묘관리사무소〉
○ 계직제 신설
· 서무계, 관리계 신설

<조직개편결과 정원증감현황>

□ **정원감축 ———— 8명 (행정4급 1, 행정5급 2, 기능직 5)**

○ 시 본 청 ——— △6명(행정4급 1, 행정5급 2, 기능직 3)
○ 사 업 소 ——— △2명(기능직 2)
※ 감축인력은 감량운영 차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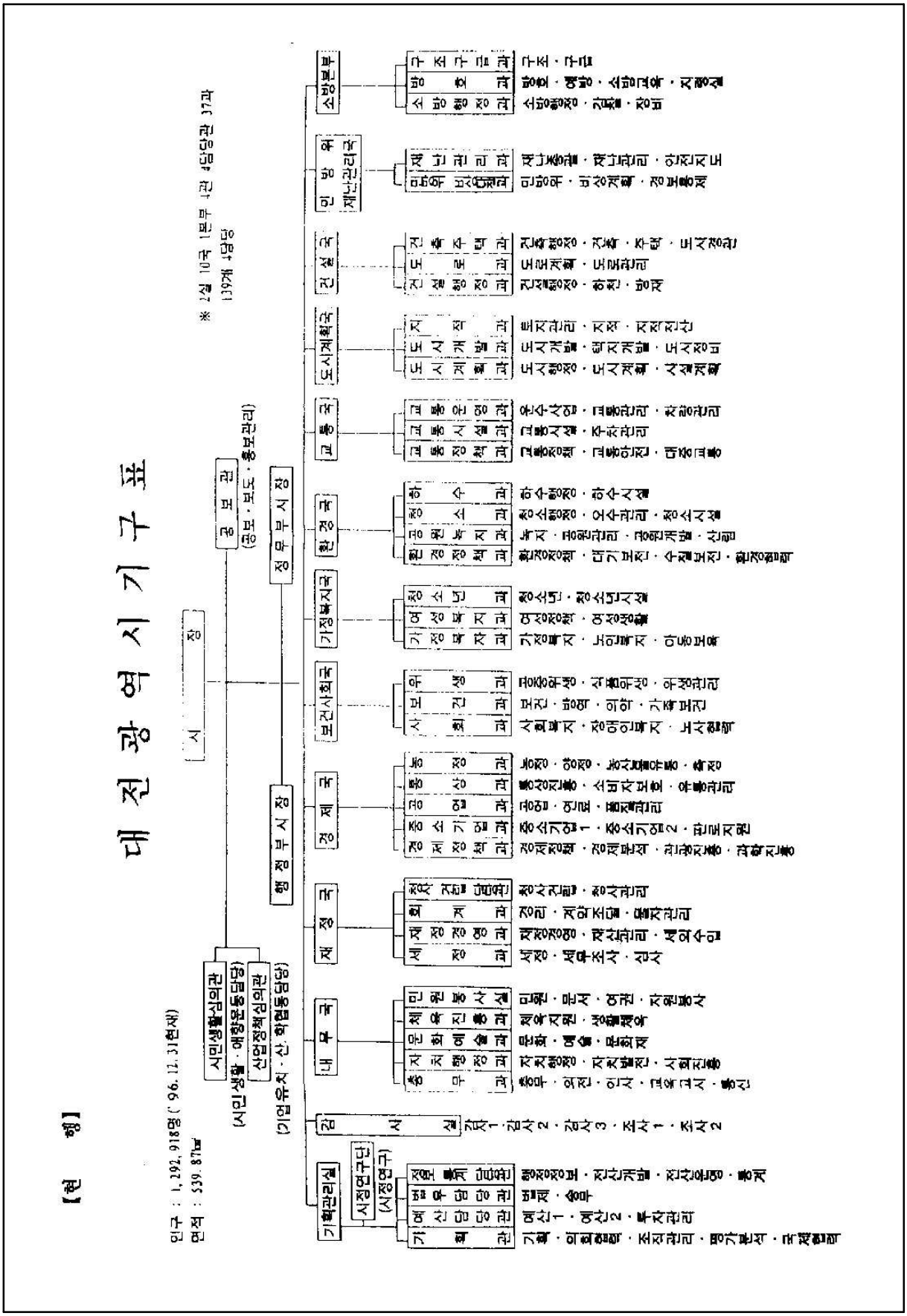
【현 행】
대전광역시기구표
인구 : 1,292,918명('96. 12. 31현재)
면적 : 539.87㎢
시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공보관
(공보·보도·홍보담당)
시민생활심의관
(시민생활·애향운동담당)
산업정책심의관
(기업유치·산.학협동담당)
※ 2실 10국 1본부 4관 4담당관 17과
139개 4담당
기획관리실
시정연구단
(시정연구)
감사실
내무국
재정국
정제국
보건사회국
기정복지국
환경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방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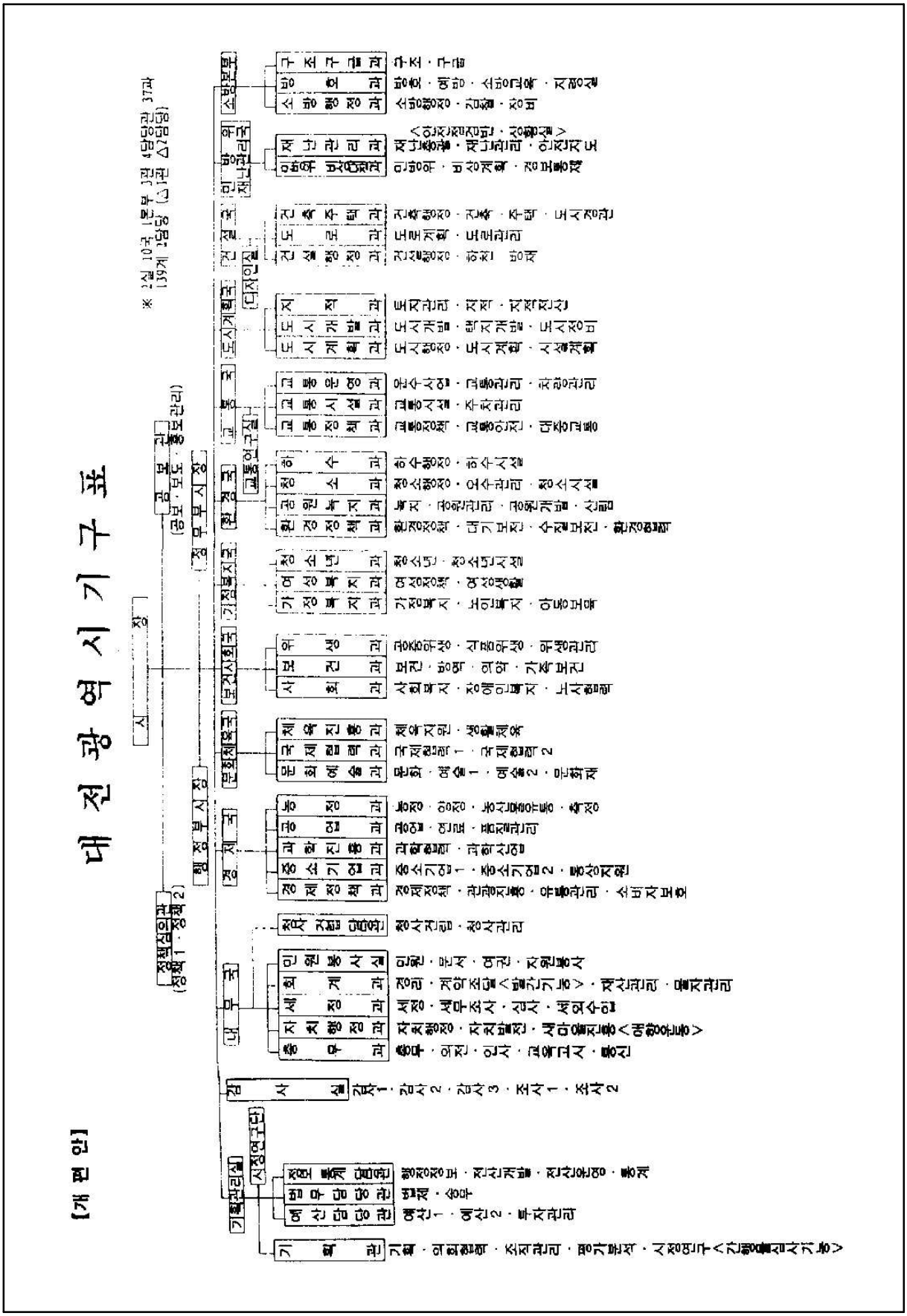
【개 편 안】
대전광역시기구표
시 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정책실(정책1·정책2)
※ 2실 10국 1본부 3관 4담당관 37과
139계 2담당 (소방관 2담당)

사 업 소

【개 편 안】

· 현 행 : 19사업소 2담당관 8부 13과 104계
· 개 편 : 18사업소 2담당관 8부 14과 108계
· 증 감 : -------- △1사업소 증1과 증4계

구분	수도시설관리소 동부·중부지역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자 종합복지관	장묘관리사무소
현행	소 장 서무계 / 공무계 / 계량기계 소 장 업무계 / 요금계 / 금수계 / 공무계 / 노소반지계	본부장 총무부 / 건설1부 / 건설2부 도로담당 / 하천담당 / 조경담당 소 장 서무과 / 시설관리과 / 시험실 서무 / 장비 / 시설계획 / 도로관리 / 공원녹지	근청관장 서무계 / 교육계 / 상담실 근종관장 사무장	소 장 (하부조직 없음)
개편안	소 장 서무계 / 공무계 / 기전계 / 계량기계 소 장 업무계 / 요금계 / 공무계 / 노소반지계	본부장 총무부 / 건설1부 / 건설2부 공사1담당 / 공사2담당 / 조경담당 소 장 서무과 / 도로관리과 / 하천관리과 / 시험실 서무 / 장비 / 단속 / 도로관리 / 도로정비 / 즉시처리 / 하천관리 / 하천정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서무계 / 교육계 / 상담실 (통·폐합)	소 장 서무계 / 관리계 (계직제 신설)